

##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어떻게 돼 가나?

# 쟁점별 회원국가 입장차 크게 달라 감당할 수 있는 개혁안 도출해 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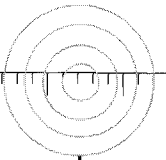
2004년말까지 협상타결 일정, 세부원칙 수립위한 회의 진행중  
국내여건 감안 선택 쉽지 않아, 다양한 토론·국민지혜로 풀어야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래 8차에 걸친 무역자유화협상을 하면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이 대부분 없어지고 무역적 보조금은 줄이거나 금지하도록 하는 등 눈부신 자유화를 이룬 반면 농업분야를 무역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농업분야가 실질적인 무역자유화의 흐름 속에 편입된 것은 8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을 통해서였다.

### 각국의 농업정책, 국제규범 틀 속으로

UR협상결과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분야로 나누어 농업분야를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규범이 마련되었다. 시장접근분야에

서는 수량제한 등 농산물에 대한 각종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고(관세화), 관세는 6년간 평균 36%를 감축(품목별로 최소 15% 감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관세화를 통해 높은 관세가 나타난 품목은 일정 물량(시장접근물량)에 대해 낮은 관세로 수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특별긴급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내보조금도 생산이나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허용하되, 그렇지 않은 것은 보조총액을 6년간 20% 감축하기로 하였다. 수출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물량과 지원금액을 각각



24%, 36% 줄이기로 하였다.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을 1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와 보조금의 감축폭도 선진국의 2/3 수준으로 줄여 주는 등 우대조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농산물은 UR협상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므로 공산품에 비해 장벽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2000년부터 추가협상을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00년부터 새로운 농업협상이 시작되었다. 2000.1~2001.3월에는 협상의 목표와 그 달성방법에 대한 회원국들의 제안을 논의하였고, 2001.3~2002.3월에는 관세·허용보조금 등 주요 쟁점을 선정하여 논의한 바 있다. 그러다가 2001년 11월에 UR협상에 이은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출범함으로써 농업협상도 그 일부분으로 통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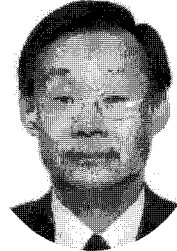
이에 따라 향후 농업협상은 보조금과 관세 감축 등의 세부원칙(Modality)을 2003년 3월말까지 수립하고, 동 세부원칙에 따른 국가별 이행계획을 2003년 9월에 개최될 제 5차 WTO각료회의시까지 제출하며, 2004년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현재 빈번하게 회의가 개최되면서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기술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DDA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들

각 쟁점별로 회원국들간에 입장차가 매우 큰 것이 현실이다. 미국과 케언즈그룹(농업에 대한 보조금이 없거나 미미하면서도 농산

물을 수출하는 나라들이 1986년에 결성한 그룹.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등 18개 회원국이 있음) 그리고 다수의 개도국이 포함된 농산물수출국

들은 UR협상 결과 시장개방의 확대나 보조금 감축에 별 진전이 없었다면서 급진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일본·유럽연합 등 농산물수입국(농산물 수출에 비해 수입이 더 많은 나라, 즉 '농산물순수입국' 들 중에서 농산물교역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에 반대하면서 식량안보, 환경보호, 농촌개발 등 농업이 수행하는 비시장적, 공공재적인 기능을 감안한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방식의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모리셔스 등 6개국을 말함. 이들은 농업협상에 대한 예비적인 논의가 진행되던 '98년부터 수출국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WTO 무대에서는 이들을 통상 NTC그룹이라 부름)들은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시장접근 분야】 수출국들은 UR협상 결과 고관세 품목이 많이 존재하고 주요품목은 소폭만 감축하여 교역이 별로 확대되지 못한다면 고율관세를 대폭 감축하여 시장개방

을 대폭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 말 미국이 제안한 내용(관세를 상한을 25%로 하는 스위스공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하자고 제안. 미국이 제안한 공식은 '감축후관세 = (25×현행관세)/(25+현행관세)'로서 이 공식에 의하면 현행관세율이 높을수록 감축 폭이 큼)은 이런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NTC국가와 동구권 국가들은 UR협상의 관세감축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의 대폭 확대와 수입관리방법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범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이 반대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각국 상황에 맞는 관리방법을 허용하는 신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지지는 별로 없는 소수의 목소리인 것이 현실이다. 특별긴급관세에 대해 수출국들은 사용하는 국가도 적고 과도기적 조치이므로 폐지하지는 입장인 반면, 수입국들은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유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보조 분야】** 미국과 케언즈그룹 등은 현재 감축의무가 없는 생산제한직접지불이 무역왜곡효과가 있으므로 감축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TC그룹은 현행 보조금 분류체계가 각국이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을 그렇지 않은 보조금으로 바꾸어 나가는 농정개혁 추진에 유용하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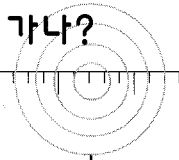
도상국가들은 모든 국내보조금을 통합하여 농업생산액 대비 일정비율 이상은 자유롭게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허용보조 분야에서 수출국들은 현행 규범이 느슨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이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허용보조로 위장분류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허용보조의 요건을 강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들은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살려 나가고 각국이 농정개혁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허용보조의 요건을 신축성있게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허용보조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 대해 수출국들은 UR협상 때보다 대폭적으로 감축하고, 총액을 기준으로 감축하는 융통성을 인정하지 말고 품목별로 감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국들은 총액을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출경쟁 분야】** 가장 큰 쟁점은 수출보조를 철폐할 것인지 여부이다. 미국과 케언즈그룹, 농산물수출 개도국 등은 수출보조야말로 농산물 무역을 가장 심하게 왜곡하는 조치이므로 철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수출보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수출보조 및 무역에 대해 수출보조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포괄적으로 감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출신용의 경우 수출신용제공기간 등을 엄격하게 규율하



자는 유럽연합 및 케언즈그룹 등의 주장과 신축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특수한 과제

양허협상 단계에서 맞게 될 최대 쟁점은 우리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이다. 그러나 OECD 가입과 고도화된 경제구조, 첨단제품의 공격적인 수출 등을 이유로 강력한 개도국졸업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협상이 예상된다. 만일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및 시장 접근물량, 국내보조 등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무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다.

진행중인 농업협상의 한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적으로 연계될 수 밖에 없는 현안이 쌀 문제이다. 2005년 이후 관세화 유예여부는 2004년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협상에 달려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WTO농업협정의 기본원칙인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거나 일정기간 추가적으로 관세화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이 있다. 관세화원칙을 수용하는 경우 기준년도('86~'88) 국내외가격차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TE)의 90%수준으로 개방해야 하고 관세화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관세화에서 이탈하는 데 대한 대가로 이해관계국들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가격과 영세한 규모, 노령화된 가족농 구조, 수급상황 등을 감안하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토론과 국민적 지혜를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미래상황을 예측하고 그 토대위에서 대안을 논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앞으로의 대응방향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점진적인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대외적으로는 수입국들과 지난 몇 년간 공동으로 구축해 온 공조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보조금과 관세감축의 세부원칙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세부원칙 수립 이후 전개될 품목별 시장 개방을 위한 협상에 대비하여 우리 시장에 관심이 많은 주요 수출국들과도 대화채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농업인과 일반국민을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협상 동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예상되는 협상결과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국내 대책도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의정보**